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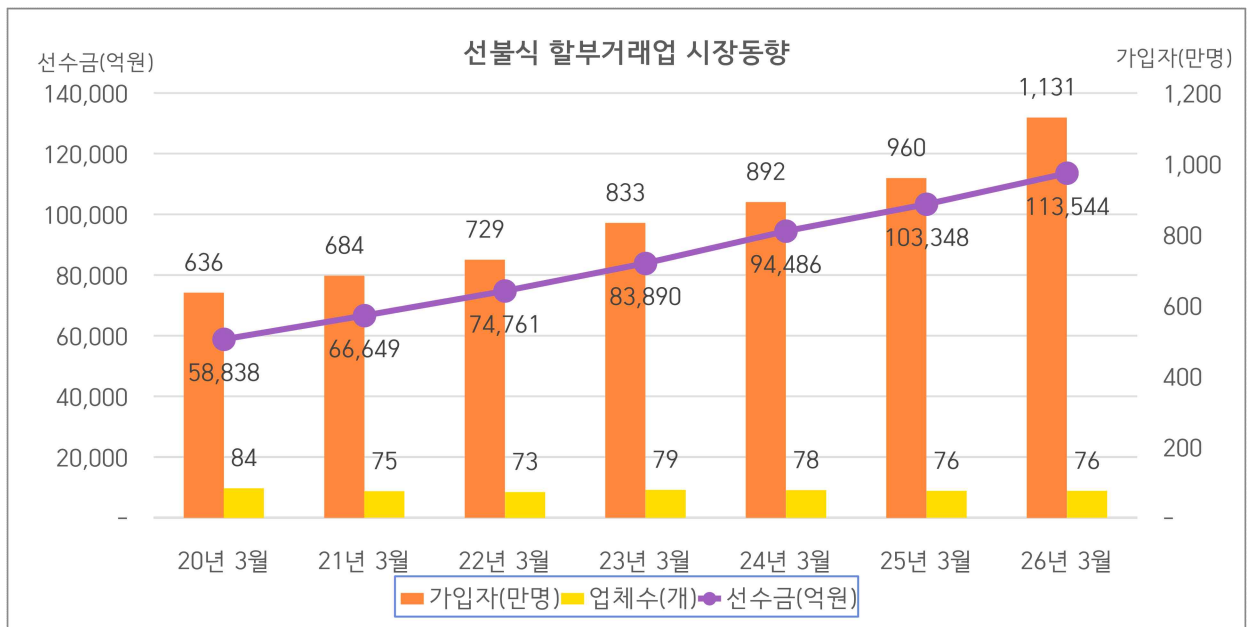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11조 원대 규모로 성장

-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 -
- 계약자 수 1,131만 명, 선수금 11조 3,544억 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계약자 수는 작년 대비 171만 명이 증가한 1,1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조 196억 원이 증가한 11조 3,54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개, 여행전용·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0개로 2025년 대비 각 2개사가 줄었고,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0개로 작년 대비 4개사가 증가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 오랜 기간동안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립식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고, 2025년 2월에는 선수금의 40%를, 2026년 2월부터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전비율이 상향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11개사)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는데, 자신이 계약한 업체의 법 위반 여부 확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메뉴에서 사업자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가입자 수가 1,130만 명을 돌파하고 선수금 규모가 11조 원대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5.14)후 법사위 계류 중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붙임1>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붙임2> 선불식 할부거래 시 소비자 유의사항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은애 (044-200-4430)
	특수거래정책과	담당자	조사관	오서영 (044-200-4436)



I 개요

1 추진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8조 제6항, 제7항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부당행위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 공개’ (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 분석대상 및 공개방법

- 이번 정보공개는 '26년 3월 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76개 업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련 주요 정보는 '11년 6월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 공개 자료는 '26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부당행위 등이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

- '26년 3월 말 기준 분석대상 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1,131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11조 3,544억 원이다.
- '25년 대비 2개 업체가 등록 취소, 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전체 등록업체 수는 동일하며, 가입자 수는 약 171만 명 증가하였고, 선수금 또한 1조 196억 원 증가하였다.

〈표1: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22년 3월	'23년 3월	'24년 3월	'25년 3월	'26년 3월	'25년 대비 증감(%)
등록업체 수	73	79	78	76	76	0(-)
가입자 수	729	833	892	960	1,131	171(17.8)
선수금	74,761	83,890	94,486	103,348	113,544	10,196(9.9)

※ '26년 3월 말 기준 등록업체 76개 업체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2 판매상품 유형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 판매 상품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상조상품의 가입자 수는 1,107.4만 명(전체 가입자의 97.9%)이고 선수금 규모는 11조 2,426억 원(전체 선수금의 99.0%)인 반면,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3.6만 명(전체 가입자의 2.1%)이고 선수금 규모는 1,118억 원(전체 선수금의 1.0%)이다.
- **(순수 상조업체)** 선불식 상조상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60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783만 명(전체 가입자의 69.2%), 선수금 규모는 7조 6,045억 원(전체 선수금의 67.0%)이다.

- **(여행상품 판매 상조업체)** 선불식 상조 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업체는 10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327만 명(전체 가입자의 28.9%), 선수금 규모는 3조 6,511억 원(전체 선수금의 32.1%)이다.
- **(순수 여행업체)** 적립식 여행상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6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21만 명(전체 가입자의 1.9%), 선수금 규모는 988억 원(전체 선수금의 0.9%)이다.

〈표2: 판매상품 유형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구 분	순수 상조업체	여행상품 판매 상조업체		순수 여행업체	전체
		상조상품	여행상품		
등록업체 수(개) (%)	60 (78.9)	10 (13.1)		6 (8.0)	76 (100.0)
가입자수(만 명) (%)	783 (69.2)	324.4 (28.7)	2.6 (0.2)	21 (1.9)	1,131 (100.0)
		327 (28.9)			
	1,107.4 (97.9)		23.6 (2.1)		
선수금(억 원) (%)	76,045 (67.0)	36,381 (32.0)	130 (0.1)	988 (0.9)	113,544 (100.0)
		36,511 (32.1)			
	112,426 (99.0)		1,118 (1.0)		

3 지역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소재지와 소비자가 계약한 상품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소재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업체 분포)** 수도권(서울, 경기)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9개(64.5%)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은 18개(23.7%)이다.
 - '25년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없다.
 - **(지역별 가입자 분포)**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계약한 소비자는 91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 수도권 업체 계약자 수가 전체 80.5%를 차지한 반면, 강원·제주 권은 12.3%, 영남권은 6.3%, 광주·전라권은 0.8%, 대전·충청권은 0.2%에 그치는 등 수도권 업체의 계약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지역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만 명)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계
업체수 (%)	'25. 3월	49 (64.5)	18 (23.7)	4 (5.3)	2 (2.6)	3 (3.9)	76 (100.0)
	'26. 3월	49 (64.5)	18 (23.7)	4 (5.3)	2 (2.6)	3 (3.9)	76 (100.0)
가입자수 (%)	'25. 3월	754.4 (78.6)	61.9 (6.4)	2.0 (0.2)	8.4 (0.9)	133.6 (13.9)	960.4 (100.0)
	'26. 3월	910.9 (80.5)	71.1 (6.3)	1.8 (0.2)	8.4 (0.8)	139.2 (12.3)	1,131.6

4 가입자 수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 **(가입자 집중현황)** 가입자의 경우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17개로 전체 업체 수의 22.37%를 차지하며,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1,027만 명(업체당 평균 약 60.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0.79%를 차지한다.
 -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2개로, 전체 업체 수의 15.79%를 차지하나,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약 3천2백여 명(업체당 평균 약 27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03%에 불과하다.
- **(선수금 집중현황)** 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7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10조 2,18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0.00%에 달한다.
 -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2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02%에 해당한다.

〈표4: 가입자 수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구 분	1천 명 미만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10만 명 이상	계
업체 수 (%)	12 (15.79)	20 (26.31)	27 (35.53)	17 (22.37)	76 (100.00)
가입자 수 (%)	3 (0.03)	109 (0.96)	930 (8.22)	10,274 (90.79)	11,316 (100.00)
선수금 (%)	24 (0.02)	1,260 (1.11)	10,071 (8.87)	102,189 (90.00)	113,544 (100.00)

5 선수금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 **(선수금 분포)** 총 선수금은 11조 3,544억 원으로 '25년 대비 1조 196억 원 증가(9.9%)하였으며, 선수금 대부분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6개 사로 해당 업체들의 총 선수금(10조 2,669억 원)은 전체 선수금의 90.42%이며,
 -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19개)의 총 선수금은 6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05%를 차지한다.

〈표5: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계
업체수 (%)	19 (25.00)	5 (6.58)	6 (7.90)	30 (39.47)	16 (21.05)	76 (100.00)
선수금 (%)	60 (0.05)	79 (0.07)	442 (0.39)	10,294 (9.07)	102,669 (90.42)	113,544 (100.00)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3.2	15.8	74	343	6,417	

- **(선수금 집중 추세)** 선수금 규모에 따른 업체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선수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5년과 동일한 16개 사 이고,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10조 2,669억 원으로, 작년 대비 9,753억 원 증가하였다.

〈표6: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23년 3월	'24년 3월	'25년 3월	'26년 3월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 수(증감)	14 (1)	14 (-)	16 (2)	16 (-)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71,996 (10,597)	82,138 (10,142)	92,916 (10,778)	102,669 (9,753)

-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25년보다 2개사가 줄어 19개 사이며,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60억 원으로, 작년 대비 9억 원 감소하였다.

〈표7: 선수금 10억 원 미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23년 3월	'24년 3월	'25년 3월	'26년 3월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수(증감)	22 (7)	20 (△2)	21 (1)	19 (△2)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84 (5)	72 (△12)	69 (△3)	60 (△9)

- **(가입자 분포)** 가입자 수는 1,0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1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감소하였다.
 -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는 1,010.6만 명으로 '25년 대비 155.9만 명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91.3만 명으로 '25년 대비 5.1만 명 증가하였다.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4.7만 명 증가하였고,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10.1만 명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5년 대비 45만명 감소하였다.

〈표8: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계
'23년 3월	3.3	1.6	8.4	100.4	719.7	833.4
'24년 3월	13.9	1.7	4.3	118.5	753.9	892.3
'25년 3월	14.0	2.2	3.2	86.2	854.7	960.3
'26년 3월	9.5	12.3	7.9	91.3	1,010.6	1,131.6
'25년 3월 대비 증감	△4.5	10.1	4.7	5.1	155.9	171.3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11조 3,544억 원의 50.6%인 5조 7,492억 원을 공제조합(공제계약)과 은행(예치·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함

○ 판매상품 유형별로는 상조상품의 경우 선수금 11조 2,426억 원의 50.7%인 5조 6,944억 원을 보전하고 있고, 여행상품의 경우 선수금 1,118억 원의 49.0%*인 548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여행상품의 경우 '25년 3월 기준 40%, '26년 3월 기준 50%를 보전해야 하나, 여행상품 1개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38%로 전체 비율이 낮아졌으며, 해당 업체는 '26년 6월 현재 보전비율을 50%로 시정하였음

○ **(공제계약)**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1개 사로 총 선수금(3조 5,211억 원)의 50.0%인 1조 7,605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임

- 전체 상조 가입자의 31.0%(350만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받고 있다.

○ **(은행 예치계약)**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 사로 총 선수금(4,234억 원)의 50.8%인 2,15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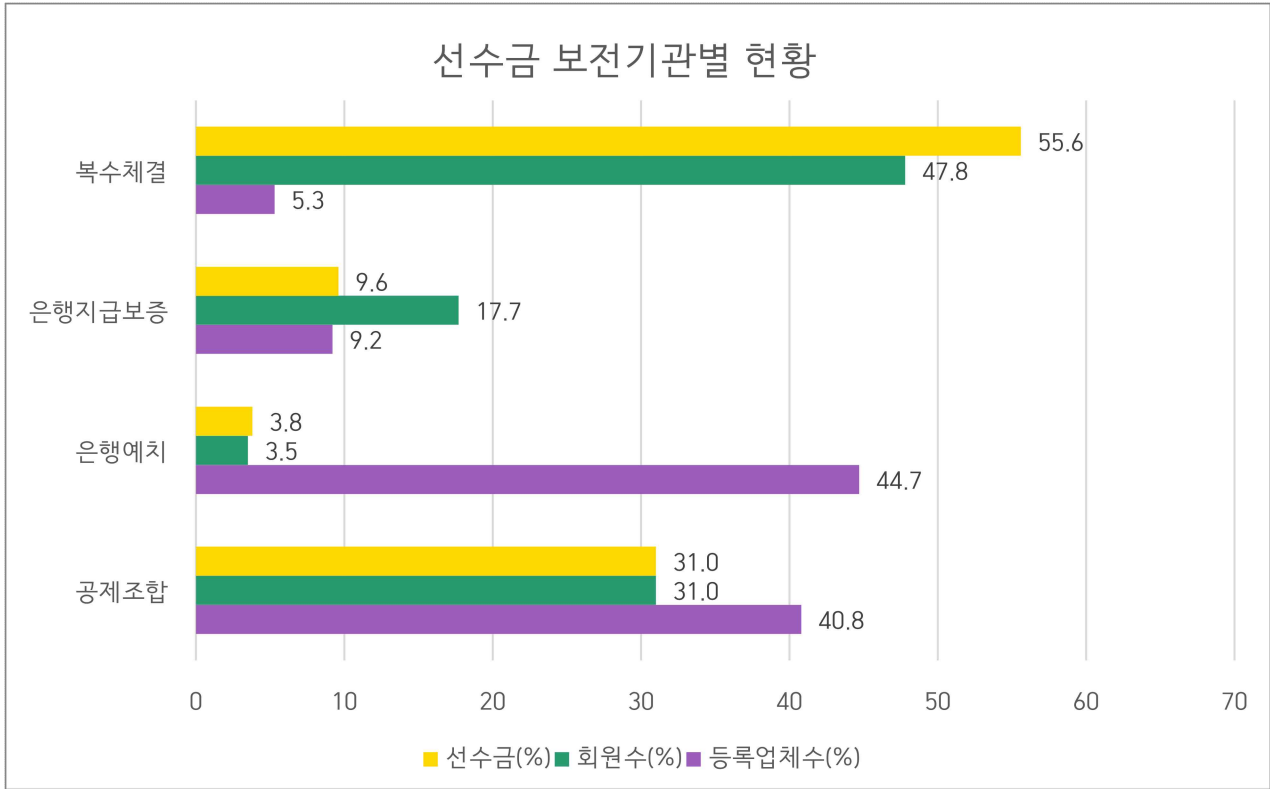
- 은행 예치계약을 맺은 업체 수는 34개 사로 전체 사업자의 44.7%를 차지함에도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약 40만 명)에 불과하다.
- **(은행 지급보증)**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7개 사로 총 선수금(1조 924억 원)의 50.7%인 5,538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 지급보증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임
- **(복수 체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총 선수금(6조 3,176억 원)의 51.0%인 3조 2,197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해당 업체들 중 2개 사는 은행 예치와 은행 지급보증을 병행하고, 2개 사는 공제조합 가입과 은행 지급보증을 병행하고 있다.

〈표9: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복수 체결	전체
업체수 (%)	31 (40.8)	34 (44.7)	7 (9.2)	4 (5.3)	76 (100.0)
회원수 (%)	350 (31.0)	40 (3.5)	200 (17.7)	541 (47.8)	1,131 (100.0)
선수금 (%)	35,211 (31.0)	4,234 (3.8)	10,924 (9.6)	63,175 (55.6)	113,544 (100.0)
보전금액*	17,605	2,152	5,538	32,197	57,492
보전비율	50.0%	50.8%	50.7%	51.0%	50.6%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법정 보전비율 50%)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표10: 판매상품 유형별 현황〉

(단위 : 만 명, 억 원)

구 분	상조상품	여행상품	전체
회원수 (%)	1,107 (97.9)	24 (2.1)	1,131 (100.0)
선수금 (%)	112,426 (99.0)	1,118 (1.0)	113,544 (100.0)
보전금액*	56,944	548	57,492
보전비율	50.7%	49.0%	50.6%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법정 보전비율 50%)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IV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 '25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공정위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 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행위유형 기준)** 해당 기간 중 공정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행위(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5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미준수 행위(할부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5건, 영업정지명령 불이행 행위(할부거래법 제48조 제5호) 1건 등 총 11건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다.
 - **(조치수준 기준)** 할부거래법 금지행위 위반관련 시정명령 4건, 경고 7건 등 총 11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표11: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내용	경고	시정명령	합계
할부거래법 금지행위 관련 위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1	4	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미준수	5		5
시정조치 불이행	영업정지명령 불이행	1		1
합 계		7	4	11

*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표기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26년 3월 기준 등록된 업체 수는 작년과 동일함에도 선수금 규모는 1조 196억 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71만 명이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상조시장이 11조 원대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선수금의 안전한 관리와 업체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할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구분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전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여부 및 해당 상조계약이 「할부거래법」 상 선불식 할부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여부 등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 계약체결 시 상조업체가 설명하는 내용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조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이하 '전자제품등')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대상(계약건)인지 확인한다. ○ 고가의 가전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수한 사은품이 되기 어려우므로 상조상품과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월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 초기 월 납입금 중 상조상품 납입금과 전자제품등의 납입금의 비중을 확인한다. ○ 전자제품등의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조상품 외 전자제품등의 계약은 「할부거래법」 상 선불식 할부계약이 아니므로 상조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계약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 계약 내용에 만기 납입 후 해제 시 납입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만기 후 환급까지의 기간 등 그 달성 조건에 유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의 계약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조계약을 만기 전에 상조상품의 이용 없이 해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일정금액(관리비, 모집수당 등)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한다.

구분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중	<p><input type="checkbox"/> 상조업체 정보 및 계약사항을 미리 주기적으로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누리집 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를 통하여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 재정건전성 및 「할부거래법」 위반 이력 등을 확인한다. ○ 사업자가 통지하는 선수금 납입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본인의 선수금 납입 내역을 확인한다.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변경된 주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등 개인정보의 변경을 상조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선수금 납입 정보를 통지받기 어렵고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실시 여부를 통지받지 못할 수 있다. <p><input type="checkbox"/>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교부받은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한다.</p>
계약해제 / 폐업 / 등록취소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해야 한다. ○ 청약철회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 판매주체(계약서 기재)이다. <p><input type="checkbox"/>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보다 불리한지 확인한다.</p> <p>※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해당 산정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p>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p> <p>※ 선수금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p> <p><input type="checkbox"/>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상조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p> <p>※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내상조그대로’ 참여업체(14개사)를 통해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없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제도</p>